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신설 >
■ 김현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03843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신설(안 제18조 제5항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9. 10.

다.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으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 의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신설(안 제18조제5항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위원장의 임명절차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 ⑦ (생략)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u>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u>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 의견

- 방심위의 위원장은 현재 법 제18조제4항¹⁾에 따라 위원들이 호선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

- 방심위 위원은 법 제18조제2항²⁾에 따라 9인의 위원으로 구성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함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방심위원 9인은 법 제18조제3항3)에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심위원회가 구성되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을 호선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호선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심위원장(후보)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의 대통령 위촉→방심위원들의 호선으로 지명→국회의 인사청문→대통령 위촉의 절차를 거치게 됨.

○ 개정안에 대해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하였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

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 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방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⁴⁾과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공직후보자로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의 후보자가 있음.

- KBS는 「방송법」에 따른 법인이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무자본특수법인임.

○ 이 밖에 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 논의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는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4)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5)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금감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정의에 포함됨.

- 이 같은 현행 규정과 금감원장의 인사청문 대상자 포함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금감원장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입법을 통해 금감원장을 고위공직자로 정의하여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방심위를 민간독립 심의기구로 두어 국가기관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방통위법 상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방심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며,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호선으로

정해진 심의위원장에 대해 별도의 국회의 인사청문 및 대통령의 위촉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체계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심위원장의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방심위가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안의 중요성, 필요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미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호선된 위원장에 대해 별도의 국회의 인사청문 및 대통령의 위촉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질적인 절차가 중복되고, 그 순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체계 부정합의 문제가 있으며,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립한 취지 및 이를 전제하고 있는 여러 법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종합해보면, 방심위원장 위촉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와 함께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치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방통위의 신중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226